

휴가 및 휴직

고용인은 다음의 사유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일을 쉴 수 있습니다:

- 휴일을 위한 휴가 (연차휴가)
- 질병 혹은 가족원 병간호로 인한 휴가 (병가 및 간병 휴가 (www.fairwork.gov.au/language-help/korean/holidays-and-taking-time-off-work/sick-and-carers-leave))
- 공휴일 (www.fairwork.gov.au/language-help/korean/holidays-and-taking-time-off-work/public-holidays)
- 출산 혹은 입양 시 (육아휴직 (www.fairwork.gov.au/language-help/korean/holidays-and-taking-time-off-work/parental-leave)).

임시직(casual)을 제외한 고용인들은 유급으로 휴가, 병가 및 간병 휴가를 누릴 권리를 가집니다.

일을 쉴 시에는 고용인은 최저시급을 받게 되며, 이에 초과근무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여러 수당 혹은 보너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가 급여

휴가 급여(연차휴가(annual leave)로 일컫기도 함)는 고용인이 일을 쉬는 동안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연차 휴가에 관한 짧은 비디오를 시청하세요.

고용인은 휴가를 얼마나 받나요?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무자는 매년 4주의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일부 고용인들은 연차휴가수당(annual leave loading)이라 불리는 추가 급여를 받게 됩니다.

임시직(casual) 고용인은 유급 휴가를 받지 않지만, 고용주에게 무급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고용인은 근무 시작과 동시에 연차휴가를 적립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시작 후 첫 12개월 동안 언제든지

- 일일 혹은 하루의 일부를 포함한 일정량의 시간 동안

고용주 및 고용인은 휴가 사용시기에 서로 동의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거절의 이유가 합리적일 경우에만 고용인의 연차휴가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때로 고용인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 종료

고용 종료 시, 고용인은 사용하지 않은 적립된 연차휴가에 대한 금액을 지불 받아야만 합니다.

근무기간 동안 고용인의 휴가 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했었다면, 지불 받는 금액에 연차휴가수당(annual leave loading)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휴가 급여 혹은 병가 및 간병휴가를 계산하려면, 휴가 계산기([Leave Calculator \(https://calculate.fairwork.gov.au/Leave\)](https://calculate.fairwork.gov.au/Leave))를 이용하세요.

Page reference No: 7080

Contact us

Fair Work Online: www.fairwork.gov.au

Fair Work Infoline: 13 13 94

Need language help?

Contact the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IS) on 13 14 50

Hearing & speech assistance

Call through the National Relay Service (NRS):

For TTY: 13 36 77. Ask for the Fair Work Infoline 13 13 94

Speak & Listen: 1300 555 727. Ask for the Fair Work Infoline 13 13 94

The Fair Work Ombudsman is committed to providing advice that you can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on this website is general in nature. If you are unsure about how it applies to your situation you can call our Infoline on 13 13 94 or speak with a union, industry association or workplace relations professional. Visitors are warned that this site may inadvertently contain names or pictures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 who have recently died.